

『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2월 23일

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안전 하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활성화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조문의 총칙장(제1장), 본칙장(제2장~제5장), 보칙장(제6장)을 신설
- 재정지원 신설(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)

-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
-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- **시민자전거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3조)**
 - 구미시민 누구나 자전거 이용,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
 - 이용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, 분실·망실·훼손 배상책임 등
- **안전교육 무료실시와 교육장 운영 등 신설(안 제16조)**
 - 안전교육 무료실시 및 교육 수료자 자전거 운전면허증 발급
 - 민간단체가 교육장 설치·운영시 예산 지원
- **시민 자전거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7조)**
- **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 등(안 제20조)**
 - 심의·자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수 증가 15인→20인
 - 자전거정책부서 신설 등에 따른 위원회 위촉대상자 변경
- **권한의 위임·위탁사항 신설(안 제25조)**
 - 자전거이용시설 설치,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단체에 권한 위탁
 -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서류검사 등

라. 참고사항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함
- 구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1회 3시간 이내로 이용토록 하고 이용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시민자전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- 안전교육 무료실시와 교육장 운영, 시민 자전거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심의·자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변경함
- 자전거이용시설 설치,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단체에 권한의 위임·위탁사항을 규정함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에 부응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 인한 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서
- 친환경적이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, 자전거이용시설 확충, 도난 및 방치 자전거에 관한 대안 마련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